

옴부즈만 운영 현황

1. 제24차 청렴옴부즈만 회의

- 일 시 : '19. 10. 29.(화), 16:00 ~
- 장 소 : ENI 회의실(서울 강남)
- 참석자 : 청렴 옴부즈만(김경자 교수, 김범수 변호사), 감사실 직원 2명
- 안 건 :
 - (제1호) 제23차 회의 논의사항 진행 경과보고
 - (제2호) 제도개선 요구사항 추진 경과보고
 - (기타사항) 갑질 옴부즈만 보고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경과보고
 - 갑질근절 추진대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유(갑질 옴부즈만)
 - '19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진행 경과보고

안전 제1호. 제23차 회의 논의사항 진행 경과보고

1-1. 「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 행동강령」 개정(안) 경과보고

- 「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 행동강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및 반영
 - (옴부즈만 의견) 체계적인 비위면직자의 현황관리 및 재취업여부의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
- (감사실 검토결과) 청렴 옴부즈만의 제안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, 다음과 같이 「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 행동강령」 개정완료*

* 감사팀-2071(2019.10.28.)호 「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(안)」

1-2. 특정분야 청렴 옴부즈만 감사 요구사항 경과보고

- 옴부즈만 감사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원 폐기시료 사용 및 처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현황을 점검
- (감사실 검토결과) 청렴 옴부즈만 감사 요구사항 관련 테마점검 실시
 - ① 폐기시료 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완료(감사팀-737호, '19.04.26.)
 - ②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관리현황 점검 실시완료(감사팀-2033호, '19.10.25.)

안전 제2호. 제도개선 요구사항 추진 경과보고

- 인사 투명성 강화 및 부패행위 공직자의 징계처분 강화에 대한 청렴 옴부즈만 의견수렴 추진경과를 보고
 - * 청렴시민감사관 합동교류회(워크숍) 논의사항 및 청렴 제도개선 의견제출(감사팀-737호, '19.04.26)

2-1. 인사 투명성 강화 추진 경과보고

- 공기업·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('19.03.28) 등 채용·인사 비리에 대한 엄중처벌 기조에 따른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필요
 - (옴부즈만 의견1) 인사업무 결정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영향력이 큰 만큼, 의장의 표결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요구됨
 - (옴부즈만 의견2) 현재 인사규정의 경우 2급 직원에 대해 승급시험이 가능한데, 승급시험 실시 근거를 전 직원에 마련하여 인사 공정성 확보
- (감사실 검토결과) 청렴 옴부즈만의 제안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, 「인사규정」에 반영 및 개정 예정임

2-2. 부패행위 징계기준 강화 경과보고

- 최근 권익위 등 외부기관의 공직자의 비위행위(채용비리, 성범죄 등) 관련 처벌기준 강화를 권고함에 따라 부패행위 징계기준 강화 필요

- (음부즈만 의견1)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 유형의 비위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거나, 여러유형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필요
- (음부즈만 의견2) 징계로 인한 인사위원회 출석 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, 규정 부재로 인한 불명확한 사안들에 대하여 보완 요구
- (감사실 검토결과) 청렴 음부즈만의 제안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, 「직원상벌요령」에 반영 및 개정 예정임*

(기타사항) 갑질 음부즈만 보고 · 부패방지 시책평가 경과보고

3-1. 「갑질 근절 종합대책」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유(갑질 음부즈만)

- 갑질 예방과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
- (음부즈만 의견1) 갑질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직생활 내 애로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야함
- (음부즈만 의견2)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청렴교육에 반영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확산 및 전파해야할 의무가 있음
- (감사실 의견) 청렴 음부즈만 의견을 수용하여 향후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을 강화하겠음

3-2. '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진행 경과보고

- '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진행상황 보고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지표별 추진실적 공유 및 2020년도 반부패 추진계획 방향 논의
- (음부즈만 의견1)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의 청렴문화 향상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국민과 접점 영역에서 청렴문화를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음
- (음부즈만 의견2) 이러한 민·관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'20년 반부패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 및 중점 추진 필요